

##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8
----------	-----

발의연월일 : 2004년 12월 14일

발 의 자 : 박종갑의원외 6인

### □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관련법령(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부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 조항으로 분리 신설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현행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 조항으로 분리 신설(제10조)
- 별표 증인에 대한 안내문과 공무원 및 증인의 선서서에 조사부분을 추가(별표 1 ~ 2)

### □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관계법령 : 따로붙임

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지방공기업법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으로 하며 “제6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 내지 제6항”을 “제4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36조제5항 및 영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통보 등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제3항(종전 제10조제3항)”중 “법 제36조제4항”을 “제9조제1항”으로, “충청북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 기준을 준용하여”라 한다.

제11조 내지 20조를 제12조 내지 21조로 한다.

별표1호의 가호 내지 다호와 과태료부과 기준은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p> <p>① (생략) 1. ~ 5. (생략)</p> <p>6. <u>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u> <u>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외의 출자·</u> <u>출연법인중 충청북도가 4분의 1</u> <u>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u>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충청북도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p> <p>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p> <p>6. <u>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u> .....</p> <p>..... ..... ..... ..... ..... ..... ..... ..... .....</p>
<p>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p> <p>① (생략) ② <u>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u> <u>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u></p>	<p>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p> <p>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p> <p>① ~ ③ (생략)</p> <p>④ <u>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u> <u>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u> <u>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u> <u>때에는 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u> <u>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u> <u>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u> <u>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u> <u>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u></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 제)</p>



현 행	기 정
(생략) 가.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안내문안)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년도 <u>행정사무</u>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u>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u> <u>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u> <u>할 때에는</u>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과 같음) 가. ..... (..... .....) ..... ..... ..... ..... <u>행정사무</u> <u>감사(조사)</u> ..... ..... ..... <u>허위 증언시에는</u> ..... ..... .....
나. <u>피감사</u> 공무원 선서서 선 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 ○○년도 <u>행정사무감사</u> 에 임하여 성실하게 <u>감사</u> 를 받을 것이며 (이하 생략)	나. <u>피감사(조사)</u> 공무원 선서서 선 서  ..... ..... <u>행정사무감사(조사)</u> ..... ..... <u>감사(조사)</u> ..... (현행과 같음)
다.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서 선 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 ○○년도 <u>행정사무감사</u> 와 관련하여 (이하 생략)	다. ..... 선 서 ..... ..... <u>행정사무감사(조사)</u>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제9조제4항 관련) (단위: 만 원)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만 원)
부과대상	과태료
(신설)	
(생략)	500
(생략)	200
(생략)	100
(신설)	
(생략)	50
부과대상	비고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닌 경우	
○(현행과 같음)	500
○(현행과 같음)	200
○(현행과 같음)	100
2.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현행과 같음)	50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 □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4.12.20>

## □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17조의4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④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7.1>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4.7.6>

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신설 1994.7.6> [본조신설 1991.4.1]